



## 산업정책

- 2011년도「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조사 실시」안내
- 버스·택시 승객도 안전띠 매야
- 공급과잉 용달 줄이고, 택배 화물차 늘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확정·고시
- 성실납세자 우대·탈세자 관리 강화 '공정한 사회로'
- 「물가안정 대책회의」 개최결과
- 중기청·경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 강화방안 마련
-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금융제재
- '녹색 공정기술 개발'에 400억 지원
- 산업기능요원 2015년까지 유지키로
-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제재 강화

## 2011년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조사 실시」 안내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1.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

② 동법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2. 조사 일정

#### ○ 자진신고

- 자진신고 기간 : 3.21~31, 11일간
- 대상 : 국가기술자격 556개 전종목
- 신고방법 : 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

#### ○ 주무부처 조사

- 1차 조사(4.1~4.15) : 조사대상자 유선확인조사
- 2차 조사(4.16~6.30, 2.5개월간) : 사업체 조사 및 보완 조사

### 3. 조사 종목

#### ○ 자진신고 : 국가기술자격 556개 전종목

- 주무부처 조사 종목 : 2009, 2010년도에 불법대여가 많았던 종목 중에서 주무부처에서 선정

### 4. 적발시 제재

#### ○ 자진신고시 혜택

- 대여자 : 행정처분(자격정지 · 취소) : 감면\*

\* 행정처분 경감 근거규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

→ 대여1회 공제(대여 1회) : 행정처분 면제, 대여 2회(자격정지 3년)

형사처벌 : 자진신고임을 명시하여 경찰에 이송\*\*

\*\* 형법 제52조(자수)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 조사하여 적발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및 동법 제15조제2항

※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사기관은 경찰관서임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

※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1회(자격정지 3년), 2회 이상(자격취소)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별표7

※ 법 제15조의3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 방해 ·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1회시 100만원, 2회시 200만원, 3회시 300만원

- 기타사항 문의 전화 :  
산업기술기반팀 박소현(02-211-5208)

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 경주 전세버스 추락사고('09.12.16) : 31명중 17명 사망, 14명 중경상
- \*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10.3.30) : 19명중 6명 사망, 13명 중경상

## 버스 · 택시 승객도 안전띠 매야

앞으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고속도로뿐 만 아니라 일반국도 · 지방도 등을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승객에 대하여도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 구조 및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

-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 · 농어촌 및 마을 버스 제외
- 취객 등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시내도로 운행 택시 제외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11.4.12(화)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교통사고 시 대부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나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하여는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였으며 (승객에 대한 처분은 없음)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 유지와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도록 하고 위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전체도로의 5% 수준)를 운행하는 버스 · 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을 해 왔다.

한편, 버스 · 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 · 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급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법률(안)을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12년 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급과잉 용달 줄이고, 택배 화물차 늘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05년 이후 심화되고 있는 택배 등 일부 사업용 화물차량부족 해소를 위하여, 용달사업자와 택배기사간의 양도·양수를 통해 용달차량을 택배로 대규모 전환하고 동시에 공번 호판\*(T/E: Table of Equipment)도 충당하여 부족한 차량의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 후 신규 사업허가를 취득하고 당해 운송사의 허가대수(T/E)는 차량이 충당되지 않은 콩 T/E로 존재 (약 7천대의 콩 T/E 존재)

특히,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물류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을 안정시키고,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안정적으로 영업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서민 친화적 정책이라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 동안 화물운송시장은 '04.4월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 이후, '10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함에 따라 화물 차량의 공급과잉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 과잉공급 추세 : 29천대('06)→25천대('07)→21천대('08)→5천대('09)

물량이 증가중인 택배분야에서는 집·배송 차량

확보가 곤란하여 전체 택배차량의 30%인 1만여대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물류기업은 영업용차량의 높은 프리미엄(1~3천만원)으로 대형(12톤 이상) 차량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화물운송 시장에서 부분적으로 영업 차량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부족 분야에 대해 선별적으로 사업용 차량이 공급되고, 자가용 택배기사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하였다.

### ① 용달차량의 택배로의 적극적 양도·양수 추진

택배와 용달사업에 동일규모의 차량(1톤이하)이 사용되나, 용달사업은 택배와 달리 물량감소 등으로 공급과잉으로 파악됨에 따라,

- 유류 용달차량이 택배업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용달차주(양도자)·자가용 택배기사(양수자)간의 대규모 사업권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거래의 장을 마련키로 함

\* 용달사업자가 사업 양도 → 자가용 택배기사가 양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적정 양도·양수가격을 산정(7백만원) 하고, 전국용달화 물자동차운송 사업연합회(회장 박종수)와 한국통합 물류협회(회장 석태수) 주관으로 양도·양수 신청자를 모집하여 계약 체결

국토해양부는 자가용 택배기사의 사업자 전환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달 차량 구매 비용을 연리 2%에 5년이내 상환 조건으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미소 금융과 연결하고, 이자는 국고에서 지원키로 함

\* 5년 상환시 이자부담액 : 36만원 (양도가격 700만원 기준)

\* 원금은 영업용 전환에 따라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월 10여만원)으로 상환 보조 가능

## ② 사업용 공번호판(T/E) 충당

'05년~'10년간 지입 화물차주가 신규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기존 운송사업자의 공번호판을 택배분야와 물류기업에 공급되도록 추진

공번호판의 당초 차량 적재량이 12톤 대형 미만(3천여대)인 경우에는 자가용 택배기사 차량으로 충당하고,

- 12톤 이상은 당초 적재량으로 연간 50%씩 연차적으로 충당한 후 양도·양수 조정 등을 통해 차량이 필요한 우수 물류 기업(인증업체 등)에게 공급되도록 유도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상기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김옥상)·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박종수)·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간에 MOU를 체결('11.4.7)도록 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우리미소금융재단\*이 MOU를 체결 할 계획('11.4.18)이라고 하면서,

\* '미소금융 중앙재단'에서 '우리미소금융재단'을 우리부에 추천

금번 대책이 "친서민과 기업애로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자가용 택배기사의 지위 개선과 택배 등 부족 화물차량 공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확정·고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3월 16일자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고시된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관리업체 지정, 목표 설정, 산정·보고·검증, 검증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조직경계 설정방법, 관리업체의 지정절차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 ② 목표의 협의·설정

## ■ 산업정책

-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방법, 목표 설정방법(과거실적기반, 벤치마크기반), 목표 이행 평가방법, 목표설정협의체 구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 보고

- 고정연소 등 33개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보고방법론, 모니터링 계획 작성, 명세서 작성방법 및 품질관리 · 품질보증(QC/QA) 등에 관한 사항

### ④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

- 관리업체가 작성한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규정

### ⑤ 이행실적 · 명세서의 작성 및 확인

- 관리업체의 이행실적보고서 · 명세서 작성방법, 정부의 확인절차 등 규정

### ⑥ 조기감축실적 등의 인정

- 제도 시행이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에 대한 인정절차 및 방법

- 조직경계 밖에서 감축한 실적인 외부감축실적 인정근거 규정

### ⑦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 검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검증심사원의 교육 · 등록에 관한 사항

⑧ 기타 : 명세서의 공개절차, 관장기관 소관사무 접검 · 평가 등

환경부는 이번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산정 · 보고 · 검증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EU, 미국, 호주 등의 관련법령과 함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해당규정을 면밀히 분석 · 반영한 바, 향후 도입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는 물론 국제 탄소시장에의 참여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였는바, 먼저 3천CO<sub>2</sub>톤 미만의 소량 배출사업장이나 10CO<sub>2</sub>톤 미만의 극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절차를 경감하였다.

또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기업의 신 · 증설 계획 등이 감안될 수 있도록 하였고, 목표관리 제도 시행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도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 · 중소기업 협력 등 관리업체가 조직경계 밖에 있는 탄소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외부감축실적의 인정근거도 함께 규정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의 초안 단계부터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물론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표관리 자문단

운영,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데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개별 기업들의 온실가스·에너지 의무 보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한 사례는 EU,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불과하며, 비부속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라는 점에서 금번 지침의 고시에 큰 의의가 있는 바,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이 고시되면서 작년 9월에 지정된 468개 관리업체들은 본격적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착수하게 된다.

먼저, 관리업체들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금년은 제도 첫해인 점을 감안, 그 제출기한을 5월말(당초 3월)로 하여 2개월의 추가 준비기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오는 9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2012년부터는 목표 이행년도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총괄기관과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제도 설명회, 해설서 배포,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업체들의 명세서 작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성실납세자 우대·탈세자 관리 강화 '공정한 사회로'

[공정사회 추진회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 마련

일자리 창출 기업 등 모범기업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탈세자나 고액체납자에게는 출국규제 확대,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구성 등 세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 분야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모든 경제생활과 직결돼 국민의 4대의무 중 공정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로, 정부는 일반국민·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중점추진과제를 발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사회는 조세정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국민들은 이점을 이해하고 많은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모범기업과 성실납세자 지원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반면 탈세자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부과의 원천이 되는 소득과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법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성실납세,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중소·지방기업,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시적 경영여건 악화로 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 규모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 지방세 온라인 납부 도입 등 납세편의도 개선된다.

정부는 또 모범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고 성실납세 인증마크(엠블렘)를 사업장 현판에 부착, 모범납세자의 명예와 이미지를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대출·입찰 등 사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출국시 공항 출입국 전용 심사대, 귀빈실 이용 확대 등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재정부는 “관련 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발적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는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등 시민운동을 확산하고 학생용 세금학습교재 개발·보급 등 미래 납세자에 대

한 세금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탈세자·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소득 신고 전 세무사로부터 사전에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올해 상반기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시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검토, 결산서류 공시대상 공익법인 확대, 변칙 탈루유형 중점관리가 제시됐다.

정부는 또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첫 실시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에 대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탈루소득 파악을 위한 세정전문요원 해외 파견, 외국과세당국과 동시 조사 등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규제 대상 확대, 명단공개 확대 및 공개방법 다양화, 외국정부와 정보교환협정 확대를 통한 해외 은닉재산 파악,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구성 등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전국 228개 시·군·구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소득, 재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은 관할구역 밖의 자치단

체도 암류, 징수할 수 있도록 위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각 과제별로 세부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1/행정  
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921/국세청 정책조  
정담당관 02-397-1046/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042-  
481-7605

## 「물가안정 대책회의」 개최 결과

□ 정부는 4.15(금) 17:00,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여

○ 4월 들어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확인

### 〈 회의개요 〉

- 일시/장소 : 2011.4.15(금) 17:00 / 과천청사 1동(기획재정부) 대회의실
- 참석부처 : 재정부 1차관(주재), 교과부·행안부·농식품부·지경부·복지부·국토부·문화부·방통위·공정위·국세청·통계청·금융위(13개)

### 〈 최근 물가 여건 관련 〉

□ 소비자물가는 지난 3월 4.7%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4월 들어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

○ 다만, 국제유가·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

\* 생산자물가(전년동월비, %) : (10.12) 5.3 (11.1) 6.2 (2) 6.6 (3) 7.3 \* 수입 물 가(전년동월비, %) : (10.12) 12.7 (11.1) 14.1 (2) 16.9 (3) 19.6

□ 우선, 국제유가\*는 지난 월요일(4.11일) 118불까지 상승하며, 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계속 불안정한 모습

\* Dubai유(\$/B) : (11.1) 92.5 (2) 100.2 (3) 108.5 (4.1~14) 114.7

○ 국제유가의 향방은 중동정세의 전개상황, 세계 경제 회복 속도 등에 의해 좌우되겠으나, 당분간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유가 상승은 석유제품가격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기업 원가부담 등 간접적인 효과 등 물가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 정부는 향후 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가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고, 에너지절약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국내 유가\*의 경우, 정유사의 기름값 할인이

점차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면서 어제 기준으로 4월 6일 대비 60원 하락 하는 등 가격안정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 전국 휘발유가격(오피넷) : (4.6일) 1970.9→(4.14) 1910.6

- 일부 주유소에서는 제대로 인하 조치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선과 불편을 초래

- 정유사의 가격인하는 국민에게 한 약속인만큼,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가격 인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단체의 감시 활동 결과를 참고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 나가겠음

□ 국제곡물 및 원자재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기업의 원가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가공식품 등의 가격인상 우려가 커지는 상황

\*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률 (전년대비, %) : (옥수수)116 (소맥)62 (원당)54 (원면)156 (커피원두)106 (나프타)40

○ 그동안 정부는 작년말부터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품협회를 중심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기업에 대하여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

\* 금년들어 할당관세 32개 추가시행, 육가공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등 지원대책 수립(11.2.7일) 등

- 그 결과 그동안 국제곡물 및 국내농축수산물 가

격의 높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서민생계 부담을 줄여왔음

-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할당관세 99개 품목 외에 주요 수입 원재료 10여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할당관세를 시행할 예정

○ 최근 일부 가공식품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포장지변경, 중량 조정 등을 통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편법적인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해볼 계획

○ 소비자단체에서도 가공식품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편법적 가격인상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견전한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

□ 농축수산물 가격은 채소류를 중심으로 최근 하락폭이 커지고 있으나, 쌀·돼지고기·고등어 등 일부 농축수산물의 불안이 지속

○ 쌀 가격은 최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 보유분을 적극 방출하여, 쌀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

\* 쌀값(20kg/원) : (3.14) 42,489 (4.7) 44,062 (4.14) 44,414 / (평년) 43,141

- 정부가 공매하기로 발표한 '10년산 15만톤 중 5만톤을 기 공매(3.30일)하였으며, 금일(4.15일) '10년산 5만톤을 추가로 공매

- 동시에, 2009년산 정부 비축물량(77만톤)을 금일 이후 쌀 가공업체(도정업체 등)을 대상으로 저가에 판매할('10년산 49,700원→'09년산 44,080원/kg) 계획

-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인 만큼, 쌀 가격 상승시

소비자물가와 서민 생계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비자물가 가중치(%) : 쌀(1.4) 배추(0.2) 무(0.1) 돼지고기(0.8) \* 소비자물가 품목 가중치 중 8위

○ 돼지고기 가격은 2월 최고치인 11,000원(500g 당) 수준보다 하락하여 9,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 여전히 평년가격(7,00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구제역에 따른 공급 부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농식품부는 냉동삼겹살 할당관세 물량이 조기에 수입\*되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업체 및 유통업체를 독려할 필요

\* 할당관세 6만톤 중 현재까지 10,400톤 가량 수입

○ 고등어는 어획량이 부진하여 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

- 수입확대를 통한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상반기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10%→0%)를 운용 중

- 금년도 수입이 전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수입량(천톤) : (10년연간)42 (10.1~2)2.7 (11.1~2)21 (713%↑)

- 수협을 통한 할당관세 물량 직공급을 확대하고, 고등어 등 수산물 4개품목에 대한 상시 비축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

□ 개인서비스 분야는 업종이 다양하고 요금결정도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책수단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자체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자체들이 외식·세탁·목욕·숙박 등 직능단체들과의 간담회, 시군별 가격정보 비교 등을 통해 개인서비스 요금인상 자체 분위기를 조성

○ 앞으로도 각 지자체에서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

□ 대내외 물가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월 초 통신 TF 결과를 발표하는 등 구조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물가 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이미 석유 TF를 통해 마련한 구조개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 철저히 짐검

## 중기청·경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 강화방안 마련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이 힘을 합쳐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비롯한 기술보호 기반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지난 13일 양 기관의 기술보호 담당자 실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중요기

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공동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7월에 체결된 중소기업청과 경찰청간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첫째, R&D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점 보호기업」의 지정·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전예방활동 강화, 둘째, 해외 진출기업들의 기술보호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의 해외상담기능 확대, 셋째, 官·產·學을 연계한 중소기업보안협의회 구성·운영 등 지역거점기반 기술보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7월중에 “제2회 IT&Security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기술보호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 좌담회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함께 펼쳐 나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MOU 이후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지역 순회 설명회 및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경찰청은 주요 6개 지역 지방경찰청 산하에 기술유출 수사를 위한 전담조직(산업기술유출수사대)을 신설·운영 중이고, 기술유출 피해 신고전화(1566-0112)를 구축하였으며, 중소기업청도 기술보호 상담센터를 통해 수사가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여 경찰청과 공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문제로

수사기관을 대하여 느끼는 어려움을 줄이고 신속한 수사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해 왔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실시한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3.2%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으며, 그 피해액은 전당 1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이번 후속대책으로, 중기청의 기술유출 예방지원 정책과 경찰청의 형사적 사후구제 방안이 어우러지고, 기술보호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전체적인 경제안보 확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기청-경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강화 대책 요약

추진과제	세부 추진대책
① 기술유출 사전예방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R&amp;D 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중점 보호기업」으로 지정·운영</li><li>중소기업 「맞춤형 현장클리닉」 실시</li></ul>
② 해외 진출기업 기술보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해외 진출 중소기업 대상 해외세미나 개최</li><li>기술보호상담센터의 해외상담 기능 확대</li></ul>
③ 지역기점기반 기술 보호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官·產·學 연계 중소기업 보안협의회 구성·운영</li><li>간담회, 보안역량 강화교육 등 기술보호 활동 추진</li></ul>
④ 기술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언론매체를 활용한 인식제고 활동(우수사례 보도, 좌담회, 정책포럼 등)</li><li>산업기술유출수사대, 기술보호상담센터, 기술자료임차센터, 정보보안종합관제센터 등 기술보호 관련 정책 통합 홍보자료 제작배포</li></ul>
⑤ 전문교육 및 대외행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문교육 및 관계기관 협동 워크샵 실시</li><li>제2차 IT&amp;Security 컨퍼런스 개최</li></ul>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042-481-4400, 4401) 또는 경찰청 외사수사과(02-3150-0389)로 하면 된다.

문의 : 기술협력과 김영철(042-481-4400)

##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 금융제재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와 기업이 탄력근로 시간제와 근로시간저축허가제 등을 통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또 임금을 일부러 주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고 금융·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공개일 이전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경우, 직전 1년간 임금 등을 3회 이상 체불해 시정지시를 받고도 청산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상 체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체불 사업주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대출받거나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 신용등급을 평가받을 때 불리해진다.

금융제재 대상은 체불자료제공일 이전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

로 기소중지된 경우, 직전 1년 동안 임금을 2회 체불해 시정지시를 받거나 시정지시를 받은 체불 임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 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입법예고됐으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또 여름 성수기나 겨울 비수기 등 계절업종과 관련된 기업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렸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통해 보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 휴가제도 도입된다.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80% 미만 출근해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부여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시점도 휴가청구권 행사 기간 만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겨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로 인해 30만여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받고 있고 체불액도 연간 1조3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체벌사업주가 소액의 벌금만 내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기업 거래 체무의 경우 우선 변제하면서 체불임금 지급을 미뤄왔던 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녹색 공정기술 개발’에 400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제조업체들이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 경영을 펼치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최근 발표한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사업’에 따르면 올해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70개 내외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은 민간연구소와 협력하는 ‘산·연 협력과제’와 업체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제안과제’로 구분해 진행한다.

산·연협력과제는 전문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해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보급하는 형태로 개발기간 2년이내에서 최대 6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제안과제는 업체가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녹색 공정기술을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기간 1년이내에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보조를 받는다.

공정기술은 전자, 통신, 조선,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모두 사용되는 기반기술로 중소기업에 집중돼 운용되는 특징이 있다. 관련산업 매출은 30조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중기청 측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중소업체들도 제조공정혁신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올해는 산·연 협력과제의 비중을 높여 전문기관이 첨단공정기술을 업체들

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28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산업기능요원 2015년까지 유지키로

국방부는 당초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산업기능요원과 의경 등의 대체복무를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의경 1만4천806명, 해경 1천300명, 의무소방원 320명 등 전환복무요원 1만6천426명과 산업기능요원 4천명 등 매년 2만426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특히 정부의 우수 기능인력 육성 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에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중 40%를 전문계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자에 할당하고 이 비율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 분야별 대체복무 배정 인원은 경비교도 260명, 전경 2천480명, 의경 1만1명, 해경 320명, 의무소방원 80명 등 전환복무요원 1만3천800여명과 산업기능요원 3천700명 등 모두 1만7천500명 수준이다.

국방부가 지난 2007년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배정 인원

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내년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병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1개월로 조정되면서 발생한 임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치안력 확보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복무 폐지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제재 강화

앞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이 어려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개선 지침’을 전국 각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바로잡으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7월부터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업주가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3년 동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을 상대로 관계부처 협동 특별단속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 결정 때 불법체류율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인력 송출중단도 추진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한 기능 및 창업훈련, 본국 고용정보 제공,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체류기간 만료자의 자발적인 귀국을 유도하기로 했다. 작년 1월말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16만9천845명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발생하는 것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불법 체류자는 물론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서 불법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공급의 연결고리를 차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